

GATT와 우리나라의 책임과 의무

—개발도상국졸업론과 개방을 중심으로—

孫 炳 憲*

목 차

1. 序
2. NIEs와 개발도상국졸업론
 - 가. NIEs
 - 나. NIEs에 대한 인식
 - 다. 개발도상국졸업론
 - 라. 책임분담론
3.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졸업론과 의무이행
 - 가. GATT 18조
 - 나. 개발도상국졸업
 - 다. 의무이행
4. 우리나라의 수입개방
 - 가. 수입자유화 추이
 - 나. 최근의 수입자유화
 - 다. 향후 수입자유화계획
5. 국제규범일치를 위한 노력
6. 結 語

1. 序

최근 우리나라는 대외개방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1990년 이후 국제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되어 1991년에는 97억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990년, 1991년 두 해에 걸쳐 10% 가까이 올라가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몇해동안의 경제 성장이 건설을 비롯한 국내수요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동안 급속한 노임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해진 가운데 수입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대외개방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국제화·선진화에 필수적이며 경제규모확대에 따른 통상마찰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기본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가 표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무역정책의 기본목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i) 자유무역을 통한 무역의 확대균형
- ii) 국내 무역관련정책 및 제도의 국제화
- iii) 다자간 무역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기여 강화
- iv) 이들을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조정과 국제

*商工部 貿易政策課 事務官

경쟁력 강화

v) 통상마찰의 완화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기본목표는 국내적으로 대외무역법, 공업발전법 등 각종 관련법령의 제정·개정과 대외적으로는 GATT, IMF 등 국제기구와의 협의 및 UR에의 참여 등을 통하여 형성·변화되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기본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중에서 특히 GATT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개발도상국졸업과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수입개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GATT 체제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NIEs와 개발도상국졸업론

가. NIEs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걸쳐 국제경제권에서는 NICs(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라는 새로운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이 NICs에 대한 명칭은 1988년 6월 선진경제정상회담에서 중공의 요청으로 NIEs(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로 바뀐다. 본고에서는 이하 NIEs로 사용한다).

NIEs에는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중 선발 개발도상국의 위치를 확보한 중진공업국으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NIEs 4개국과 브라질, 멕시코 등 보는 관점에 따라 남미국과 그리고 기타 몇개국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NIEs는 국내생산에서 제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수출지향적 공업국으로 외향적 성장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세계경제에서의 미국의 쇠퇴, 일본·EC의 등장과 함께 세계경제의 다극화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개발도상국 그룹 일부의 부상

이라는 측면을 넘어 향후 미국, 일본, EC 다음가는 경제세력으로 부상할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나. NIEs에 대한 인식

초기에 NIEs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GATT체제의 목표인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의 결과로서 NIEs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환영하면서 선진국의 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NIEs의 계속적인 성장을 고무·격려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 후 초기의 인식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하여 특히 아시아 NIEs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내게 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경계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980년대 초반의 선진국과 NIEs와의 통상마찰로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1980년대 후반에는 NIEs에 대한 본격적인 압력이 가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통상압력 등을 통한 개발도상국졸업 요구 그리고 이와 관련한 책임분담론이다. 그동안 NIEs 국가들의 대응은 초기에는 국제 다자간 협상체제에서의 소극적인 객체로서 순조로운 국제무역환경의 수혜자로서 안주하고 있었으나, 선진국의 NIEs에 대한 경계와 관련한 수혜폭의 축소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를 국제경제주체로서 인식하게 되는 단계를 거쳐 최근 UR협상에서는 자신의 국제경제에서의 위상증대에 따른 역할수행을 위해 선진국과 후발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영역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다. 개발도상국졸업론

NIEs 국가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예에서와 같이 GATT 체제내의 순조로운 무역환경에서의 수혜자로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세계무역에서의 비중이 증대되어온 반면에 그간 1,2차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기를 거치면서 주요

선진교역상대국은 세계무역환경의 악화, 특히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의 확대에 따라 이러한 제반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NIEs에 대한 개발도상국졸업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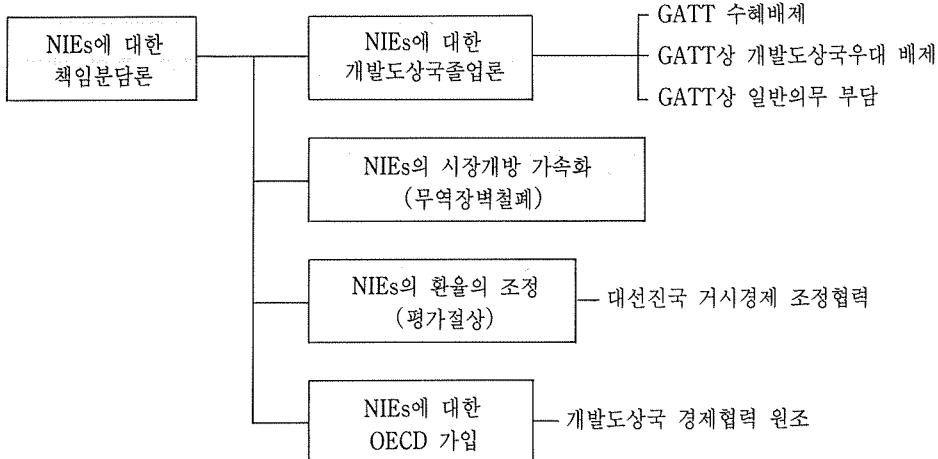
물론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졸업 요구는 시기 및 방법에서 개발도상국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NIEs 국가 자체로서는 이러한 졸업에 대해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이를 수용할 내부적 정책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라. 책임분담론

NIEs에 대한 개발도상국졸업론과 책임분담론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엄밀한 의

미에서 책임분담론은 개발도상국졸업론에 근거하여 주장된 것이지만 그 범위는 훨씬 넓다. GATT 규범상으로 볼 때 졸업은 개발도상국 우대 조항에 의해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유보되었던 의무를 GATT원칙으로 복귀시키는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에는 GATT 18조 B항에 의거 허용되던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제반 수입규제의 철폐, GATT 36조 8항 관세협상에서의 특혜배제, 나아가서 UR과 같은 세계 무역질서의 개선과 형성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나타나며, GATT의 선진국의 졸업정책으로 GSP의 수혜배제와 축소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졸업과 책임 양자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도표를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책임분담론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졸업과 의무이행

가. GATT 18조

GATT 18조는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경제발전에 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GATT

※NIEs와 개발도상국졸업론에 대하여는 KIET, 「월간 세계 경제동향」 1987.8 인용

18조는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B”항은 “국제수지(BOP : Balance of Payment) 방어를 위한 수입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A”항은 특정산업의 확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세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C, D”항은 “기타의 관세 조치와 비관세조치” 즉 비양허품목의 관세율을 조

정 등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GATT 18조는 GATT 규범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우대조항으로서 특히 동조 B항은 12조(선진국을 위한 BOP조항)와 함께 GATT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 예외 규정이며 개발도상국졸업개념이 적용되면 18조의 적용이 배제되면서 11조 국가로 이행하게 된다.

GATT 18조 졸업국가는 통상정책측면에서는 수혜자보다 시혜자로서의 입장을 가져야 하며, 무역정책면에서는 수출지상주의보다 수출입확대 균형, 산업정책면에서는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간섭제제를 추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자간협상을 비롯한 각종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나. 개발도상국졸업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GATT 18조 B 항을 적용하여 오면서 GATT 12조 B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입제한 수준을 강화할 경우에는 조치 직후 국제수지상 애로사항의 내용, 실시가능한 시정방안 등에 관해 GATT/BOP 위원회와 1969년 이후부터 2~5년 간격으로 정식 또는 약식협의를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1987년 이후부터는 주요쟁점이 개발도상국졸업문제로 부각되었으며, 1989년에는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연속적인 협의과정에서 GATT/BOP 위원회와 18조 B항의 원용중단에 합의함으로써 마침내 개발도상국졸업의 첫번째 국가로서의 영광,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게 되었다.

GATT/BOP 위원회와의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i) GATT/BOP 위원회는 한국의 1990년 1월 1일 이후 GATT 18조 B항 졸업결정을 환영함.
- ii) 또한 동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1997년 7월

1일까지 잔존 수입규제를 제거하거나 GATT규정에 일치시키려는 조치를 환영함.

- iii) 동조치는 1992년 이후 2~3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차기 자유화 예시계획은 시행 전년 3월까지 GATT에 통보하기로 함.
- iv) 다른 GATT 가입국은 한국의 수입자유화 계획에 포함된 품목과 관련한 별도의 조치를 적절히 자제함.

이와 같은 협의결과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철저한 연구 및 방향정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GATT/BOP 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도 최초의 선례로서의 특성 때문에 한국의 BOP조항 원용지속 여부에 대한 정당성과 원용중단시 잔여 수입제한기간 설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약국단 그리고 체약국단내에서도 선·후진국의 입장 차이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다. 의무이행

BOP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중단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정부는 우선 1989년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GATT 19조에 근거한 “긴급 수입제한제도” 즉 “Safeguards” 제도를 확정하고 수입자유화로 인한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의 급증으로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제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이해관계자는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조사신청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의 결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수입제한(수입물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제한)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후술하는 “4. 우리나라의 수입개방”에서와 같은 수입자유화, 그리고 “5. 국제규범 일치를 위한 노력”에서와 같은 관련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4. 우리나라의 수입개방

가. 수입자유화 추이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는 1970년대 수입자유화 초기단계, 1980년대 초반의 수출자유화 부진기를 거쳐 1980년대 후반에 본격 추진되었으며, 1988년 이후에는 수입자유화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1975년 이전까지는 사실상 수입규제 추세가 강화되어 왔으나, 1976년 이후부터 무역규모의 확대, 국제수지개선 등으로 수입자유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79~1980년간은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 및 국제수지, 경제성장, 교역조건 등의 악화로 수입자유화가 일시지체되었으나, 1981~1983년간 정부의 경제자율화, 개방화정책 기조하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 방향을 경쟁촉진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입자유화 추진은 재개되었다.

1984년 이후 수입개방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84~1986년 및 1986~1988년 각각 수입자유화계획 예시 등으로 수입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1986년 이후 국제수지 흑자시현으로 수입개방에 박차가 가해져 1988년에는 철강, 금속, 기계, 전자, 전기 등 주요 공산품 수입이 완전 개방되었다. 1989년에 들어와 수입자유화정책을 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89~1991년간 수입자유화계획을 예시하였다.

나. 최근의 수입자유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ATT/BOP 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1991년에는 우선 제1단계로 1992~1994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총 133개 품목)을 수립·발표하고 이를 GATT에 통보한 바 있으며, 1992년에는 당초의 예시와 같이 HS 10 단위를 기준으로 농산물 13개 품목, 축산물 10개 품목, 수산물 20개 품목 계 43개 품목을 자유화함으로써 수입제한품목은 1991년 283개 품목에

서 242개 품목으로 감소되었으며, 수입자유화율은 1991년 97.2%에서 1992년에는 97.7%로 증가하였다.

1992년 현재 수입제한품목의 대부분은 농축산물(232개 품목)로서 이들 품목은 영농규모 및 경영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국제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품목으로 농축산분야에 대하여는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농업경쟁력강화 및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농업구조조정노력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나 이를 위하여는 장기간의 노력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축산품목은 생산농가의 적응기간 확보를 위해 수입개방으로 인한 충격이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수입자유화율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면직물 6개 품목 등 10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은 면직물공업이 타업종에 비하여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극히 취약하며 직물의 원재료인 생사가 잡업농가의 소득과 직결되어 있어 일정기간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수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 향후 수입자유화계획

우리나라의 향후 수입자유화는 현재 진행중인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GATT/BOP 위원회와의 합의내용과 UR협상결과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나 UR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1989년 GATT/BOP 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1994년 3월에는 1995~1997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7월 1일까지 1995년 이후의 잔존 수입제한품목 152개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입개방이 불가능한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동품목의 수입제한근거를 GATT 규정에 합치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참고〉 주요연도별 수입자유화 추이 및 계획

(단위 : 개, %)

연 도	총 품 목	수입자동 승인품목	제한품목	금지품목	자유화율	자 유 화 품 목	신규제한
1967	1,312	767	440	105	58.5	-	-
1975	1,312	644	602	66	49.1	-	-
1979	1,010	683	327	-	67.6	-	-
1981	7,465	5,579	1,886	-	74.6	-	-
1983	7,560	6,078	1,482	-	80.4	305	18
1984	7,915	6,712	1,203	-	84.8	357	-
1988	10,205	9,761	534	-	94.8	333	4
1990	10,274	9,898	376	-	96.3	98	-
1991	10,274	9,991	283	-	97.2	93	-
1992	10,321	10,079	242	-	97.7	43	-
1993	10,321	10,124	197	-	98.1	45	-
1994	10,321	10,169	152	-	98.5	45	-

〈참고〉 산업별 수입자유화율

(단위 : %)

구 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84.8	87.7	91.5	93.6	94.8	95.5	96.3	97.2	97.7
공 산 품	86.7	89.7	94.0	96.6	99.5	99.5	99.7	99.9	99.9
농축수산물	59.7	62.4	65.5	65.3	71.9	76.1	80.4	84.6	87.2

5. 국제규범일치를 위한 노력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1988년 IMF 8조국, 1989년 GATT 11조국으로의 이행에 이어 현재 OECD 무역위원회 Observer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으며, OECD 가입시에는 선진국 진입과 함께 책임분담론 이상의 의무이행이 요구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후로 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증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기조를 자율과 개방에 두고,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GATT

등 국제규범에의 일치를 위한 무역자유화와 무역관련제도의 정비, 다자간·쌍무간 국제협력의 강화를 지향해 왔으며, 산업정책은 대내외 개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민간자율의 시장경쟁 체제 촉진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또한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의 국제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역 및 산업정책은 최대한 균형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자유무역시책 추진결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온 반면, 일부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산업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조정하여 왔다.

6. 番 論

지금 세계는 2000년대의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할 GATT의 여덟번째 다자간무역협상체제인 우루과이 라운드(UR)가 최종 골격을 나타내는 시점에 와 있으며, 멀지 않은 시기에 UR 타결 가능성을 앞두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GATT 체제 강화에 따른 보다 개선되고 안정된 세계 교역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의 마련과 다자간협상을 통하여 양자적 압력에 의한 조기개방의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UR 협상타결 이후에도 계속적인 무역자유화와 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향

상시켜 나가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UR 협상타결 이후의 새로운 세계 교역환경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여 장기적인 국가경제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 환경은 서독, 일본의 순조로운 경제성장시기와는 달리 더욱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로서는 그간의 국제무역의 격랑을 해쳐나온 경험으로 이를 국가보다 더욱 견고한 성장을 이를 수 있는 잠재력도 쌓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UR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능동적인 자세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월 고 모 집

「타이어」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타이어공업 분야에 관련되는 내용의 원고를
다음의 요령에 의거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